의 안 번 호 1045

【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4. 02. 04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02. 10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02. 17.(월)

2. 제정이유

- O 문화의전당(사업명:구민문화체육센터) 건립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
- O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문화예술 분야의 향유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용에 기여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(안 제2조, 제3조)
 - O 문화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 : 구청장
 - 문화의전당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
- 나. 사용시간의 기준(안 제4조)
 -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(09:00~12:00), 오후(12:00~17:00), 야간(18:00 ~22:00)으로 구분
 - O 사용시간 중 일부사용 및 무대설치 기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- 다. 문화의전당의 사용 및 변경시 구청장의 허가(안 제5조)
- 라.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(안 제6조, 제7조)
- 마.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(안 제8조)
 - O 사용허가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

- 천재지변, 불가항력 및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못한 경우 : 전액
- O 사용예정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: 30일 전까지 전액, 10일 전까지 50퍼센트 반환

바.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(안 제9조)

- 흥행성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 : 수입총액의 100분의 5이내
- O 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면 해당 사용료만 납부
- O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시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순 위 등은 규칙으로 정함

사.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설치 등(안 제11조)

- O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시 사전허가 및 원상복구
- O 사용자 원상복구 미이행시 선복구 후 비용 징수

아. 기획공연 등 입장료(안 제13조)

- O 구청장의 기획공연시 입장료 징수 가능 근거
- 입장권 발행시 필요한 범위내 무료입장권 발행

자. 입장의 제한(안 제14조)

- O 전염병이 있는 사람
-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- O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
차. 문화강좌의 운영 등(안 제15조 ~ 제17조)

- O 문화강좌는 정기강좌와 수시강좌로 구분 운영
- O 문화강좌 강사의 자격과 위촉해제 기준을 규정
- O 문화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표창 근거 마련

카. 회원제 운영(안 제19조)

- 문화의전당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원을 모집・운영
- O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 징수, 30퍼센트 내에서 할인혜택 가능

타.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21조 ~ 제23조)

- O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심의·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가능
- O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

○ 위원의 임기는 2년, 연임가능,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・여비 지급 가능

4. 관련법령

- 가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3조, 제5조, 제12조, 제15조의3
- 나. 「공연법」제8조
- 다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, 제8조

5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『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에 대해 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- O 문화의전당 건립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O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시간기준, 사용허가 및 제한, 취소 사용 료 납부 및 반환, 특례 감면 등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
- O 사용자 의무, 부대설비 설치, 관람권의 발행 등 사용자에 대한 내용
 - O 기획공연, 문화강좌 운영, 회원제, 자원봉사자, 운영자문위원 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 - O 따라서, 구민들의 문화활동 진흥과 질 높은 문화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워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